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 정책관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첨단민군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

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
상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0.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의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정원 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
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하고, 산업통상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 및 광물자원팀
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 및 화학산
업팀을 각각 폐지하고, 산업통상부에 주요 현안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
하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
부 하부조직의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5. 12. 17. ~ 1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및 홍보지원팀장”을 “및 디지털소통팀장”으로, “홍보지원팀장”을 “디지털소통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언론보도, 온라인 여론동향”을 “언론보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6.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해외홍보의 지원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지원팀장”을 “디지털소통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온라인 여론 동향의 수집·분석 및 대응
2. 인터넷 뉴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 동영상 제작·홍보
4. 그 밖에 디지털 소통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6조제5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산업재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를 “갈등관리”로 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법령안에 대한 질의·회신·자문
5. 법령안 제·개정에 수반되는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86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산업환경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경제진흥과·입지총괄과·자동차과·조선해양플랜트과·엔지니어링디자인과·첨단민군협력과·중견기업정책과·중견기업지원과·유통물류과·기업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기업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기술 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0.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의 창출 지원
11.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진흥 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법령·제도의 정비
12.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13.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통계기반 구축, 인력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시행
14.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5.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 · 확산과 관련한 업종 · 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 · 학 · 연 협력 촉진
16.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 · 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17.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의 수립 · 시행
18. 소관 업종별 중 · 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 조정
19. 소관 업종별 통상 현안 관련 총괄 · 조정
20. 통상 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 · 조정 및 추진
21. 업종별 통상 관련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
22. 산업 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가 간 산업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3. 소관 산업별 국제협력 총괄 · 조정 및 해외진출 지원
24.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25.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 발전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 · 발굴에 관한 사항
27. 기업가 정신 고취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28.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국세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0. 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31.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2.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3.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통상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35.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36.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37. 산업별·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
38.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39.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평가
40.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41.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42.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 및 정보체계 구축
43. 업종별 기업·경영 관련 지표·동향 등의 수집·분석 및 평가
44.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분석
45.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연구 및 보급
46.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업종별 영향 조사·연구
47.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체결·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48. 산업과 통상 간 정보·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활용에 관

한 업무

49. 산업·무역·자원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무역·통상·자원 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 업무 총괄

51. 산업 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경제협력개발 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5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5.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총괄·조정

5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 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 분야 노사관계 관련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4. 산업 분야 노사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의 활용·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6.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산업·업종별 외국인력 및 대체복무 자원 활용 정책의 지원

8.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9.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산업별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 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3.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조정
14. 산업 분야 인력 활용·공급의 동향 분석 및 평가
15.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 분야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8.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고도화 정책의 수립·시행
19.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0.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
21.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23.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2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25. 국가생산성 혁신 관련 행사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6.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향상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7.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단체 간의 협력 지원
- ⑩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 산업의 육성 및 친환경산업(Green Ocean)의 기술개발·시장수요 창출·사업화 지원
 5. 청정생산 지원을 위한 협의회, 컨설팅사업 육성을 위한 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 방법론 개발·보급,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녹색경영 관련 시상(施賞) 등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기반 조성
 10. 청정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환경 분

- 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청정생산 관련 진단·지도
-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및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
-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영
- 18. 산업환경 과제 발굴 및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산업환경 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20. 중국·베트남 등 해외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 21. 산업환경 동향 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 22.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탄소중립 · 녹색성장 정책 추진 총괄
26.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 수립
28.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 시행
29.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 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32.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조정
33.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35. 산업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36. 산업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37.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 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38.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3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
발
40. 산업 분야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 · 관리, 산업 부문 온실
가스 배출통계 · 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41.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2.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43. 산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4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45.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6.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7.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8.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9. 산업 분야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0.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51.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2.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53. 산업 분야 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4.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5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
부문 전문인력 양성
 56. 산업·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산업계 영
향 분석 등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7. 에너지 관련 부처·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책·제도 개선
- ⑪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4.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총괄
 5. 소관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총괄
 6.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
21.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23.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24.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25.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발전의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0.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2.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 33.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 34.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 2. 지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지역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 4.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 정책의 조사·분석·성과평가·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 5. 지역사업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6.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 8.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 9.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향의 분석·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 10. 지방투자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11.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 12. 지방투자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수행 및 사업이행 관리

1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기반 성장지원 및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16.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 지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입지 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의 수립·시행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시행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운영

9.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의 수립·시행

1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2.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의 수립·시행

13. 산·학 융합지구의 지정·조성·지원

14. 공장 설립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5.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규정의 관리

17. 공장설립지원센터 · 공장설립음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
의 관리 · 감독 및 지원

18.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 · 감독

⑭ 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 이륜차 · 자전거 · 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자동차산업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 시
행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6. 지역별 자동차산업등의 발전 지원

7. 자동차산업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의 조사 · 분석

8. 자동차산업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산업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
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

1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
분석
14.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
성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
복합 인력 양성
16.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18.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9. 그 밖에 자동차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제조산업정책관 내 다
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석유·가스·해상풍
력·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
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
련된 해양플랜트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양플랜
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

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 사업 발굴 및 육성

6.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 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 진흥에 관한 사항

8. 조선·플랜트·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자원개발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9. 플랜트 기자재·해양플랜트기자재·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에 관한 사항
12. 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5. 조선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6.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⑯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지원
 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지도
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협력·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 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7.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8.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확산
19. 디자인·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2.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2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지도 및 지원
2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5.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6.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시행 및 생산성 동향 분석
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9.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30.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3.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4. 전자학습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5.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6. 전자훈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8. 생활용품산업(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세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9.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40.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

4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2.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43.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 양성

⑰ 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시행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기타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지원
 8. 방산물자의 지정,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협
의 및 업무지원
 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
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지
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
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육
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1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를 위한 항공기 임차 도입
추천
 13.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
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
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에 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
조
- ⑱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 및 예산·사업·성과 관리 총괄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발굴·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6.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7.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9.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10.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입지 및 투자 지원
11. 중견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16. 중견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소

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⑪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의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관리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⑫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시행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공동물류 지원 정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의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23.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4. 그 밖에 유통·물류 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㉑ 기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분석

4.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 부처·단체·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산업성장실) ① 산업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

항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시장과·산업규제혁신과·산업인공지능정책과·인공지능기계로봇과·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반도체과·배터리전기전자과·섬유탄소나노과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수립·시행
3. 산업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6.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총괄
8. 산업기술 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통상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 제도와 정책의 수립·시행
14.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술 통계의 수집·관리
16.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7. 산업 부문의 인문·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19.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0.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1.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22.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3.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4.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5.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6.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분석 및 추진 방안의 수립·시행
27.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8.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9.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0. 산업원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⑧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관리
 4.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5. 기술획득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6.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7.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9.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12.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13.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해외 기술·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수립·시행
 15.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홍보

16.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7.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지원 및 사업 운영
18. 산업기술개발의 도전·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운영
19.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이전 지원
20.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1.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2.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23.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4.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25.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26. 기술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7.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28.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29.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31.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2. 기술거래사 등록·육성 및 지원
33.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34.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출자·관리
3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등을 포함한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

책의 수립·시행

36.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37.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39. 녹색기술·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40. 산업계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41. 이공계 기술 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정책에 관한 사항
4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43.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⑨ 산업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국내외 제도·규제 동향 분석
2. 산업 분야 제도·규제개선 관련 정책 수립
3. 산업 분야 제도·규제 개선 과제 발굴·기획·이행·점검 및 총괄 조정
4. 산업 분야 제도·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 및 기업활동 제
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6.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산업 규제개선사항의 발굴·검토 등 총괄
7. 「산업융합촉진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시행
9. 산업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10. 산업융합촉진 ombudsman 운영·지원 등 산업 융·복합화 저해 현장

규제 발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11.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산업융합 규제특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15.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6.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의 사업 개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8.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의 규제 특례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19.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⑩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3.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제조업 등에서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선도과제 발굴·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5. 제조업 등에서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
6.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운영
7. 제조업 등의 산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추진
10.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추진
11.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12.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 관련 조사·분석
13.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제조업 등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운영

14.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협회의 육성 및 지원

15.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기관 간 협력

16. 제조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제조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연계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9. 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장비 산업(연구·정보통신·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기계요소 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일반기계·장비 산업 기술의 개발·보급·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반기계·장비 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 산업 발굴 및 육성

5. 일반기계·장비 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장비 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4. 우수 로봇 제품·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
19.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관련 전시·경진대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2.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23.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24.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확산하기 위한 민간협
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5.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확산하기 위한 사업·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제조 공장 등 산업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27. 그 밖에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⑫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시행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구축·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
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6.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건강관련 산업의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바이오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⑬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素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반도체산업·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 · 운영
 8.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 · 공용화 · 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 · 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 · 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 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 · 수출입 · 내수 · 설비투자 ·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 · 단체 · 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 ·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⑭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 · 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발광다이오드(LED) · 조명 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충전기기(重電器機) · 전선 · 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배터리 · 전자 · 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 · 전자 · 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 · 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5.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 · 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 · 시스템인증 등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의 시험 · 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 · 조정

14. 소관 연구기관 · 단체 · 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5. 그 밖에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⑮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 · 패션 · 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섬유원료산업(화학 · 천연 · 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 · 니트산업, 염색 · 가공산업, 패션 · 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 · 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기술융합화 · 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 · 의류 · 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 · 칼라, 패션 서비스 · 비즈니스, 패션브랜드 · 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 · 탄소섬유 · 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 · 건축용, 수산 · 해양용, 의료용 섬유사 · 직물 · 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 · 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 · 학 · 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의 조성

6. 화학섬유 · 염색가공 · 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1. 탄소소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탄소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3. 탄소소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14. 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탄소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탄소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17. 탄소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18. 탄소소재의 수급기업 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9. 탄소소재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22.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23.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24.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5.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26.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7.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28.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29. 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30.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운영
31. 그 밖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33.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⑩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

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3. 소관 산업에 대한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4. 소관 산업에 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5. 소관 산업에 대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6. 소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7. 소관 산업에 대한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소관 산업에 대한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시행

9.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11.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안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원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자원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원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3호부터 제9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자원안보실에 자원안보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석

탄산업과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화학산업과 · 무역안보정책과 · 무역안보심사과 · 기술안보과 및 광물 자원팀·자원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운영
2.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전담기관의 지정·관리
5.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등 자원안보 정보의 종합관리
6.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핵심자원 공급망 취약성 점검·분석 등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7. 핵심자원의 비축 및 비축계획의 수립·시행
8. 핵심자원 재자원화 시책 수립·시행 및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운용
9.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정 명령 등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10. 자원안보 위기 경보의 발령
11.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12. 자원 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 · 지원
13. 석유 · 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15.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16.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의 수립 · 시행
17.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18.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 · 시행
19.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 ·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20. 국내외 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21.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 ·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2.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 · 유통 · 관리
23.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24.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25. 석유 · 가스 광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추진 및 관련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26. 북한과의 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7.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8. 석유·가스 관련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9.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30.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오일샌드(Oil Sand) 등 차세대 자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1.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3.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4.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5.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6.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37.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8.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9.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40.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
 41.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2.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4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⑧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영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 ⑨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
개선
14. 가스 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
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⑩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18항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
4.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7.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 내 지식기반 미래 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8.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9.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10.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보공유 촉진 및 지원
11.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관리
13.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5.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6. 뿌리산업 소관 법령·제도의 운영
 17. 그 밖에 산업공급망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부품·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시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시행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8. 소재·부품·장비의 전문화·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11.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 조성
12.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14.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15.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7.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⑬ 철강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비철금속·세라믹(유리·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철강·비철금속 광석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철강·비철금속·세라믹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철강·비철금속 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稀有)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철강·시멘트·레미콘·세라믹 산업의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철강·시멘트·레미콘·세라믹 산업의 지원·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1. 세라믹 산업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2. 철강·비철금속·세라믹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3. 세라믹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4. 세라믹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소관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 ⑭ 화학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

-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 · 중간원료 · 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 · 시행
3.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 · 분석
8.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
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 · 공급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

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⑮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정보의 조사·연구

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 및 집행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무역제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의 기획·운영 총괄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운영 총괄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4.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에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25.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26. 무역안보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27.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
 28. 무역안보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29. 그 밖에 무역안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⑯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영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11.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2.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무역제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⑰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이하 이 항에서 “기술안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및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운영

7.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분석·관리
9.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10.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6.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17.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 및 판정신청통지
18.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말소
19.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0.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에 관한 사항
21.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22.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행

- 23.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 24.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25.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 26. 기술안보 관련 국제협약체 대응

⑱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광물자원(해외·해양 광물자원을 포함하며, 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 2.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 4. 광물자원 개발 관련 재정 지원
- 5. 광물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 6.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8. 광물자원 개발 통계의 생산·유통·관리
- 9.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지원
-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11.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13. 광물자원 개발·비축·가공과 관련된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석재·골재자원의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16.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조직·투자제도 등의 조사·개선
17.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9.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0. 광산(석유·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⑲ 자원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송유관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3.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4. 가스·송유관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추진
5. 가스·송유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6. 가스안전기기 등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
7. 가스·석유 관련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점검·평가
8. 가스·석유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9. 가스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0. 가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1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부담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 중 “실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상정책총괄과·미주통상과·구주통상과·신통상전략과·디지털경제통상과·기후에너지통상”을 “통상정책총괄과·미주통상과·구주통상과·신통상전략과·디지털경제통상과·기후경제통상”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을 각각 “기후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1호) 중 “제20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통상협정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

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상협정교섭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교섭실에 통상협정정책기획과·통상협정이행과·통상협정 활용과·통상협정협상총괄과·통상협정상품과·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통상협정무역규범과·통상법무기획과·세계무역기구과·다자통상협력과·통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통상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통상협정 체결의 사전 타당성 조사·분석
3. 통상협정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4. 통상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5. 통상협정 체결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통상협정의 추진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통상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3.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내절차의 수행
5. 통상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6. 체결된 통상협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7.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영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시행
4.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수립·시행
5.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6.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7. 통상협정 활용을 위한 국내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8.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9.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분석·연구
10.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12.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확산
13.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홈페이지 운영·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⑩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협상의 총괄·조정
2. 통상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그 밖에 통상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통상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4. 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6. 통상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7. 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⑫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유보안의 수립·총괄·조정
에 관한 업무

3. 통상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⑬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정부조달·경쟁정책·환경
·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통상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
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통상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통상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2.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그 밖에 다자통상법무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무역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⑩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무역·환경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
· 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유럽정
상회의와 관련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
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
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

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⑱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
의 총괄·조정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
영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
·시행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5조제2항 중 “무역안보정책관으로”를 “원전전략기획관으로”로, “무
역안보정책관은”을 “원전전략기획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무
역안보정책관”을 “원전전략기획관”으로, “제56호”를 “제4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투자정책과·
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무역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
보과”를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
·해외투자과·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수출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

10항제26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한 사항 및 투자정책관 내”로 한다.

제15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한다.

⑬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및 시행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7.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및 수출통제 준수를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추진
8.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9.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동향 분석과 관련 통계 관리

11.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 및 수출 통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수출 통제·관리를 위한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통제·관리, 제도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1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관리 관련 외국 제도 분석·대응
1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과 수출의 통제·관리를 위한 사항 및 원전전략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원전수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을 각각 “통상협정”으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8조제1호 중 “기후에너지통상과”을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상교섭실: 통상협정정책기획과, 통상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 통상협정협상총괄과, 통상협정상품과,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통상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제10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40조를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3 중 총계 “783”을 “810”으로, 일반직 계 “773”을 “800”으로, 고위공
무원단 “27”을 “29”로,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
구관 “16”을 “1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0”을
“41”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
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
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
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
·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
·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61”을 “62”로 하며, 행정사
무관 64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
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
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
·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21”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10”를 삭제하며, 행정주사 24 다음에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49”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42”를 삭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

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56”을 “5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83”을 “810”으로, 정무직 계 “4”를 “3”으로, 일반직 계 “773”을 “800”으로, 고위공무원단 “27”을 “29”로,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6”을 “18”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0”을 “41”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64”를 “65”로 하고, 행정사무관 63 다음에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38”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
 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27”를 삭제
 하고, 행정주사 24 다음에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
 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
 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
 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
 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
 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40”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
 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
 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
 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
 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33”를 삭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
 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
 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9”를 “52”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산업통상부령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홍보지원팀”을 “디지털소통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홍보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를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로, “홍보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을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원안전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원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

음 날부터 자원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7]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9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	0명	2027년 9월 30일까지
2) 산업정책실 첨단민군협력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3) 산업성장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4) 산업성장실 산업인공지능정책과	10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5) 산업자원안보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별표 8]

산업통상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0조제2항 관련)

한미통상협력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 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 보 또는 감사주사보	1

[별표 9]

산업통상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1조 관련)

1. 제4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 보 또는 감사주사보	1

2. 제4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① (생략)	제3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u>홍보지원팀장</u>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 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공업 연구관으로, <u>홍보지원팀장</u> 은 과 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 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 구관으로 보한다.	② ----- 및 <u>디지털소통팀장</u> ----- ----- ----- ----- <u>디지털소통팀장</u> --- -----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내 · 외신 <u>언론보도</u> , <u>온라인</u> <u>여론동향</u> 의 수집 · 분석 및 대 응	2. ----- <u>언론보도</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인터넷 뉴스, 소셜 미디어, 외 <u>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u> <u>인 홍보에 관한 사항</u>	4.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 <u>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u> <u>원에 관한 사항</u>
5.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	5.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u>한 홍보물 발간, 홍보동영상 제작·홍보 및 해외홍보의 지원</u> <신 설> <신 설> <신 설> 6. ~ 9. (생 략) ④ <u>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u> 1. <u>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u> 2. <u>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u> 3. <u>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u> 4. <u>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u> 6. <u>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u> 7. <u>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8. <u>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해외홍보의 지원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9. ~ 12.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④ <u>디지털소통팀장-----</u> -----. 1. <u>온라인 여론 동향의 수집·분석 및 대응</u> 2. <u>인터넷 뉴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u> 3. <u>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 동영상 제작·홍보</u> 4. <u>그 밖에 디지털 소통과 관련한 업무 총괄</u>
--	---

제6조(기획조정실) ① ~ ④ (생략)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⑥·⑦ (생략)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기업활동규제개혁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분석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 및 기업활동 제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3. 기업활동규제의 조사·심사 및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산업재난담당관-----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법무담당관-----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법령안에 대한 질의·회신·자문

<삭 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법령안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u>	5. <u>법령안 제·개정에 수반되는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u>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u>규제개혁 및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등 인식 확산</u>	11. <u>갈등관리</u> ----- -----
12. ~ 16. (생략)	12. ~ 16. (현행과 같음)
⑨ ~ ⑪ (생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7조(원전전략기획관) ①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삭제>
②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원전수출진흥담당관 및 원전수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원전수출진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	
1. <u>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u>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및 시행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
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사업자의 해외시
장 개척지원
7.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및 수출
통제 준수를 위한 홍보 대책
의 수립·추진
8.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
의 관리
9.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
력양성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동향 분석과 관
련 통계 관리
11.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 및
수출 통제·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1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수출 통제·관
리를 위한 관련기관·단체와
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통제·관리, 제
도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
·다자간 국제협력
1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위반 방
지대책 수립 및 추진
1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관리
관련 외국제도 분석·대응
1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
·설비 및 기술의 수출과 수
출의 통제·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

④ 원전수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

1.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 ·

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 · 보수 · 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

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 · 보수 · 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

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 ·

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 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 · 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

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9호부터 제43호까지 및 제51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2호부터 제78호까지 및 제93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50호까지 및 제79호부터 제9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반도체과 · 배터리전기전자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섬유탄소나노과 · 기업정책팀 · 화학산업팀 ·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

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⑧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86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지역경제총괄과 · 지역경제진흥과 · 입지총괄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첨단민군협력과 · 중견기업정책과 · 중견기업지원과 · 유통물류과 · 기업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기업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 · 시행

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기술 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0.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의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기술 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0.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의 창출 지원

11.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진흥 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법령·제도의 정비

12.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

창출 지원

11.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진흥 관련 조사 · 연구 · 홍보 및
법령 · 제도의 정비

12.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
· 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 · 확
산

13.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통계기반 구축, 인력 활용 및 공
급 정책의 수립 · 시행

14.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발전기반 구축 · 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 · 표준화 지원 및 사업
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5.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발전기반 구축 · 확산과 관련한
업종 · 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 · 학 · 연 협력 촉진

16.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발전기반 구축 · 확산을 위한 신
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
성

17.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
책의 수립 · 시행

18. 소관 업종별 중 · 장기 투자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
· 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 · 확
산

13.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통계기반 구축, 인력 활용 및 공
급 정책의 수립 · 시행

14.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발전기반 구축 · 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 · 표준화 지원 및 사업
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5.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발전기반 구축 · 확산과 관련한
업종 · 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 · 학 · 연 협력 촉진

16. 주력 산업 · 미래유망 산업
발전기반 구축 · 확산을 위한 신
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
성

17.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
책의 수립 · 시행

18. 소관 업종별 중 · 장기 투자
계획의 수립 · 조정

19. 소관 업종별 통상 현안 관련
총괄 · 조정

20. 통상 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
안의 연계 방안 수립 · 조정 및

계획의 수립·조정

19. 소관 업종별 통상 현안 관련
총괄·조정

20. 통상 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
안의 연계 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

21. 업종별 통상 관련 국내 이행
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2. 산업 정책 관련 국제기구와
의 협력 및 국가 간 산업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3. 소관 산업별 국제협력 총괄
· 조정 및 해외진출 지원

24.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관
한 사항

25.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
성·발굴에 관한 사항

27. 기업가 정신 고취에 관한 정
책의 수립·시행

28.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
무협조에 관한 사항

2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국세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

추진

21. 업종별 통상 관련 국내 이행
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2. 산업 정책 관련 국제기구와
의 협력 및 국가 간 산업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3. 소관 산업별 국제협력 총괄
· 조정 및 해외진출 지원

24.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관
한 사항

25.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
성·발굴에 관한 사항

27. 기업가 정신 고취에 관한 정
책의 수립·시행

28.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
무협조에 관한 사항

2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국세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
항

30. 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31.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
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

항

30. 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약에 관한 사항

31.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
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
항

32.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3.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
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통상부 소관 정책연구
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35.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
도 및 지원

36.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
석

37. 산업별·업종별 동향 및 장
단기 전망 분석·평가

38.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
에 관한 사항

39.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
책 동향 분석·평가

40.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 분
석 및 평가

41.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

항

32.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3.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
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통상부 소관 정책연구
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35.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
도 및 지원

36.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
석

37. 산업별·업종별 동향 및 장
단기 전망 분석·평가

38.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
에 관한 사항

39.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
책 동향 분석·평가

40.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 분
석 및 평가

41.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42.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 및 정
보체계 구축

43. 업종별 기업·경영 관련 지

분석

42.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 및 정
보체계 구축

43. 업종별 기업·경영 관련 지
표·동향 등의 수집·분석 및
평가

44.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
업·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
분석

45.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연구 및 보급

46.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업종별
영향 조사·연구

47.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
의 협상·체결·이행에 따른 산
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48. 산업과 통상 간 정보·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활
용에 관한 업무

49. 산업·무역·자원 및 기술
개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
용에 관한 총괄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과의 산업·무역·통

표·동향 등의 수집·분석 및
평가

44.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
업·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
분석

45.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연구 및 보급

46.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업종별
영향 조사·연구

47.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
의 협상·체결·이행에 따른 산
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48. 산업과 통상 간 정보·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활
용에 관한 업무

49. 산업·무역·자원 및 기술
개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
용에 관한 총괄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과의 산업·무역·통
상·자원 분야 통계·동향의 조
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
업무 총괄

51. 산업 분야 통계·동향의 조
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경제

상·자원 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 업무 총괄

51. 산업 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5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5.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총괄·조정

56. 그 밖에 산업정책관 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 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 분야 노사관계 관련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4. 산업 분야 노사협력 및 노사

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5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5.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총괄·조정

56. 그 밖에 실 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 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 분야 노사관계 관련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4. 산업 분야 노사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의 활용·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6.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의 활용·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6.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산업·업종별 외국인력 및 대체복무 자원 활용 정책의 지원

8.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9.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산업별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 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3.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조정

14. 산업 분야 인력 활용·공급의 동향 분석 및 평가

7. 산업·업종별 외국인력 및 대체복무 자원 활용 정책의 지원

8.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9.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산업별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 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3.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조정

14. 산업 분야 인력 활용·공급의 동향 분석 및 평가

15.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 분야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지원

15.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 분야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8.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고도화 정책의 수립·시행

19.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0.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

21.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23.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2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25. 국가생산성 혁신 관련 행사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6.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정책의 수립·시행

18.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고도화 정책의 수립·시행

19.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0.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

21.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23.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2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25. 국가생산성 혁신 관련 행사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6.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향상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7.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단체 간의 협력 지원

⑩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향상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7.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

업·단체 간의 협력 지원

⑩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

·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 산업의 육성

및 친환경산업(Green Ocean)의

기술개발·시장수요 창출·사

업화 지원

5. 청정생산 지원을 위한 협의

회, 컨설팅사업 육성을 위한 심

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관련 기

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

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

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

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

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

·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 산업의 육성

및 친환경산업(Green Ocean)의

기술개발·시장수요 창출·사

업화 지원

5. 청정생산 지원을 위한 협의

회, 컨설팅사업 육성을 위한 심

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관련 기

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

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

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

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

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 생

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 방법론 개발·보급,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녹색경영 관련 시상(施賞) 등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기반 조성

10. 청정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청정생산 관련 진단·지도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및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9. 녹색경영 방법론 개발·보급,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녹색경영 관련 시상(施賞) 등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기반 조성

10. 청정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청정생산 관련 진단·지도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및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
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영

18. 산업환경 과제 발굴 및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에 관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
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
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산업환경 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베트남 등 해외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 분석, 산업환
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
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영

18. 산업환경 과제 발굴 및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에 관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
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
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산업환경 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베트남 등 해외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 분석, 산업환
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
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탄소중립·녹색
성장 정책 추진 총괄

26.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탄소중립·녹색
성장 정책 추진 총괄

26.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 수립

28.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9.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
한 지원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32.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조정

33.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
의 수립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35. 산업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

27.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 수립

28.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9.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
한 지원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32.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조정

33.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
의 수립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35. 산업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
시장 운영

36. 산업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
제 관련 지원 사업

37.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시장 운영

36. 산업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
제 관련 지원 사업

37.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38.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
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
성

3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
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지
침의 개발

40. 산업 분야 온실가스 총배출
량 통계의 작성·관리, 산업 부
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41.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2.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
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43. 산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
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
쇄제도 운영

분석

38.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
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
성

3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
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지
침의 개발

40. 산업 분야 온실가스 총배출
량 통계의 작성·관리, 산업 부
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41.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2.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
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43. 산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
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
쇄제도 운영

4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
의체와 관련된 사항

45.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

4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45.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6.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7.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8.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9. 산업 분야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0.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51.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2.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6.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7.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8.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9. 산업 분야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0.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51.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2.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53. 산업 분야 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4.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

53. 산업 분야 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
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4.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
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5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
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 통상부문 전문인력 양성

56. 산업·기업 관련 에너지 정
책·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산
업계 영향 분석 등 대응 및 협
력에 관한 사항

57. 에너지 관련 부처·기관과
의 업무 협조 및 정책·제도 개
선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
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개
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5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
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 통상부문 전문인력 양성

56. 산업·기업 관련 에너지 정
책·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산
업계 영향 분석 등 대응 및 협
력에 관한 사항

57. 에너지 관련 부처·기관과
의 업무 협조 및 정책·제도 개
선

⑪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4.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총
괄

5. 소관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의 수립·평가 총괄

3.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

4.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7.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
화에 따른 소관 산업 내 지식기
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8.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9.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
분석

10.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보공유 촉진 및 지원

11.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
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
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관리

6.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경제·산업동향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
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조정·
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
항

12.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
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 운용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에 관한 사항

15.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지원
에 관한 사항

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3.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15.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6. 뿌리산업 소관 법령·제도의 운영

17. 그 밖에 산업공급망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부품·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정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8.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

21.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23.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24.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25.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5.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시행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8. 소재·부품·장비의 전문화·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11.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 조성

12.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사항

29. 지역산업발전의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0.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3.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34.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2. 지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4.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 정책의 조사·분석·성과평가·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업 평가기관 운영에

14.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15.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
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
에 관한 사항

17.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
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
진에 관한 사항

⑬ 철강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철강·비철금속·세라믹(유
리·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
립·시행

2. 철강·비철금속 광석 등 기
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관한 사항

6.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
진 정책의 수립·시행

8.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규
제 완화 등 제도 개선

9.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
향의 분석·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10. 지방투자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처
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투자 지원시스템 운영
에 관한 사항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수행 및 사업이행 관
리

1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기
술기반 성장지원 및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
정 및 운영

16.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4.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다소
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철강·비철금속·세라믹 산
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
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철강·비철금속 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
발 등 희유(稀有)금속산업 발전
에 관한 사항

9. 철강·시멘트·레미콘·세라
믹 산업의 수급기업 간 상생협
력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철강·시멘트·레미콘·세
라믹 산업의 지원·육성 및 수
급 안정에 관한 사항

11. 세라믹 산업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
환에 관한 사항

12. 철강·비철금속·세라믹 산
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
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

취소, 지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
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
개선

3. 산업입지 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
정 및 지원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의
수립·시행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시행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
운영

9.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의 수
립·시행

1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

행에 관한 사항

13. 세라믹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4. 세라믹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소관단체 · 협회 · 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 · 수출입 · 내수 · 설비투자 ·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⑭ 기계로봇제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 · 장비 산업(연구 · 정보통신 · 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계요소 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일반기계 · 장비 산업 기술의 개발 · 보급 · 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반기계 · 장비 산업 분야의

업의 운영 및 지원

12.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의 수립 · 시행

13. 산 · 학 융합지구의 지정 · 조성 · 지원

14. 공장 설립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

15.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과 관련 규정의 관리

17. 공장설립지원센터 · 공장설립읍무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관리 · 감독 및 지원

18.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 · 감독

⑭ 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 이륜차 · 자전거 · 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기술융합화, 미래유망 산업 발굴 및 육성

5. 일반기계·장비 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장비 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4. 우수 로봇 제품·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산업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지역별 자동차산업등의 발전 지원

7. 자동차산업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의 조사·분석

8. 자동차산업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산업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

1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

19.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관련 전시·경진대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2.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23.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 의 업무 협조

24.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5.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6.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7.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의 수립·시행

1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14.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

16.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18.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9. 그 밖에 자동차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제조산업정책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그 밖에 일반기계 · 장비 · 로봇 산업 관련 사항 및 제조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 이륜차 · 자전거 · 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자동차산업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6. 지역별 자동차산업등의 발전 지원

7. 자동차산업등의 국내외 시장

1. 조선산업 · 조선기자재산업 · 해양플랜트산업[석유 · 가스 · 해상풍력 · 가스하이드레이트

(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 · 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 · 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조선산업 · 조선기자재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 ·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 · 조선기자재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 ·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 · 분석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 · 조선기자재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해양플랜트기

동향의 조사·분석

8. 자동차산업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산업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

1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14.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

16.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

자재산업·해양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 사업 발굴 및 육성

6.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조선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 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 진흥에 관한 사항

8. 조선·플랜트·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자원개발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9. 플랜트 기자재·해양플랜트 기자재·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제 대응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18.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9. 그 밖에 자동차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⑩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석유·가스·해상 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해양플랜트산업·해양플랜트기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에 관한 사항

12. 플랜트 원천기술·기자재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5. 조선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6.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⑪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자재산업 · 해양저장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 · 분석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 · 조선기자재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해양플랜트기
자재산업 · 해양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다른 산업과의 융
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 · 조선기자재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해양플랜트기
자재산업 · 해양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 사업 발굴 및 육성

6. 조선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 · 해양레
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7. 조선산업 · 해양플랜트산업 ·
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 · 해양레
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 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
역 진흥에 관한 사항

8. 조선 · 플랜트 · 해양플랜트산
업과 에너지 · 자원개발 연계협
력에 관한 사항

지원

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 · 개
발 · 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
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
의 지정 · 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지
도

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
립 · 시행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
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 · 협력 ·
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
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
스 기반 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9. 플랜트 기자재 · 해양플랜트 기자재 · 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에 관한 사항

12. 플랜트 원천기술 · 기자재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5. 조선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6. 소관 단체 · 협회 · 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⑰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 · 시행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 · 육성에 관한 사항

17. 디자인 · 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8.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 · 확산

19. 디자인 · 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 · 학 · 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 · 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 · 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2. 디자인 · 브랜드 · 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2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 지도 및 지원

2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
지원

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 · 개
발 · 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
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
의 지정 · 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지
도

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
립 · 시행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
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 · 협력 ·
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
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5.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26.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
발 · 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
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
항

2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
성 향상 대책 수립 · 시행 및 생
산성 동향 분석

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
종 · 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 · 학 · 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9.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
내외 산업동향의 조사 · 분석

30.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
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
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
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스 기반 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7.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8.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확산

19. 디자인·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2.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33.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4. 전자학습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5.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6. 전자훈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8. 생활용품산업(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세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9.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40.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

2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 지도 및 지원

2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
(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5.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6.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
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
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
항

2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
성 향상 대책 수립·시행 및 생
산성 동향 분석

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
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9.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
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30.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
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

4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2.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
체의 활동 지원

43.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 양
성

⑰ 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산업
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
립·시행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3.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4. 전자학습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5.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6. 전자훈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8. 생활용품산업(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세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9.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

6. 기타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지원

8. 방산물자의 지정,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협의 및 업무지원

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1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승인면제를 위한 항공기 임

상 및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40.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
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

4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2.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
체의 활동 지원

43.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 양
성

⑱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素子)·재료·
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
본정책의 수립·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
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
행

5. 반도체산업·전자부품(전자
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차 도입 추천

13.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
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에 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
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
과의 협조

⑲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의 총괄·조정 및 예산·사업·
성과 관리 총괄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
한 사항

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발굴·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
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인쇄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
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
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
의 지원

7.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
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8.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
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
력 지원

10.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
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공
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

전략 수립

6.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7.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
터베이스 구축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
굴 및 개선

9.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10.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
제, 입지 및 투자 지원

11. 중견기업 관련 통상 현안 대
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고
취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
항

1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16. 중견기업정책과 중소·벤처
기업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

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①9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컴퓨터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항

17.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①9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의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에서 같다) 및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배터리·전자·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5.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관리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⑳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시행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국제화 추진

9. 배터리·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4.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5. 그 밖에 배터리·전자·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⑳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시행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운영 등 공동물류 지원 정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 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의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구축 · 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 · 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

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

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 · 수

출입 · 내수 · 설비투자 및 연구

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

투자유치 · 해외투자지원 및 기

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

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

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19.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 시행

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 · 학 · 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

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23. 소관 단체 · 협회에 대한 지

도 및 지원

24. 그 밖에 유통 · 물류 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㉔ 기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

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

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

의 수립 · 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

3.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 · 업종별

· 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 · 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6. 소관 단체 · 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㉔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 · 패션 · 피혁 관련 제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섬유원료산업(화학 · 천연 · 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 · 니트산업, 염색 · 가공산업, 패션 · 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 · 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기술융합화 · 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 · 의류 · 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 · 칼라, 패션 서비스 · 비즈니스, 패션브랜드 · 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통계자료 수집 · 분석

4.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 · 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 · 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 섬유·탄소섬유·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건축용, 수산·해양용, 의료용 섬유사·직물·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의 조성

6. 화학섬유·염색가공·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계획실시지침의 작성·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 부처·단체·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
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
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1. 탄소소재산업의 육성·진흥
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탄소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3. 탄소소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14. 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탄소소재산업의 구조 고도
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에 관한 사항

16. 탄소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17. 탄소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18. 탄소소재의 수급기업 간 협
력 추진에 관한 사항

- 19. 탄소소재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20.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21.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 22.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 23.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 24.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25.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 26.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 27.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 28.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 29. 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30.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
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
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
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운
영

31. 그 밖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
성·지원에 관한 사항

3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
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
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
석

33.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② 기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
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
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
의 수립·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

3.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업종별
·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분석

4.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실시지침의 작성·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 부처 ·
단체 ·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
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
원에 관한 사항

㉓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의 육성 ·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의 수립 · 시행

2.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의 기초 · 중간원료 · 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 · 시행

3.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 · 분
석

8.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
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②④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

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3. 소관 산업에 대한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4. 소관 산업에 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5. 소관 산업에 대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6. 소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7. 소관 산업에 대한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소관 산업에 대한 표준화 · 공용화 · 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 · 시행
9.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 · 수출입 · 내수 · 설비투자 ·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11. 소관 연구기관 · 단체 · 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 · 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

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
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
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
· 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
체 인식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
업기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지역
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
으로 하며,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
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제10조(산업성장실) ① 산업성장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
업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산업
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
책관으로 하며, 산업기술융합정
책관·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
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 제20호 및 제38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기반실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산업기술시장혁신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경제진흥과·입지총괄과·중견기업정책과·중견기업지원과·유통물류과 및 규제샌드박스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규제샌드박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보좌한다.

④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시장과·산업규제혁신과·산업인공지능정책과·인공지능기계로봇과·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반도체과·배터리전기전자과·섬유탄소나노과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및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수립 · 시행

3. 산업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6.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총괄

8. 산업기술 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 ·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관리

11.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정책의 수립 · 시행

12. 산업통상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 · 금융 · 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수립 · 시행

3. 산업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6.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총괄

8. 산업기술 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 ·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관리

11.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정책의 수립 · 시행

12. 산업통상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 · 금

술개발 지원 제도와 정책의 수립 · 시행

14.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 · 복합화 정책의 수립 · 시행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기술 통계의 수집 · 관
리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18. 산업 부문의 인문 ·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
립 · 시행

19.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중
합정책의 수립 · 시행

20.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1.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
의 수립 · 운영

23.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
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24.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융 · 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
술개발 지원 제도와 정책의 수
립 · 시행

14.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술 통계의 수집 · 관
리

16.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17. 산업 부문의 인문 ·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
립 · 시행

18.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중
합정책의 수립 · 시행

19.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0.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21.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
의 수립 · 운영

22.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
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23.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25.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26. 산업 융 · 복합화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정책의 수립 · 시행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 · 분석 및 추진 방안의 수립 · 시행

4.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수립 · 시행

24.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정책의 수립 · 시행

25.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26.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 · 분석 및 추진 방안의 수립 · 시행

27.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28.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29.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30. 산업원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3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

7. 산업원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2. 기술획득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3.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4.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15.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6.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향에 대한 평가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관리

4.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5. 기술획득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6.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7.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9.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12.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18.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19.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20.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1. 해외 기술·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수립·시행

22.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홍보

23.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4.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지원 및 사업 운영

25. 산업기술개발의 도전·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운영

⑨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이전 지원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

13.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해외 기술·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수립·시행

15.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홍보

16.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7.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지원 및 사업 운영

18. 산업기술개발의 도전·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운영

19.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이전 지원

20.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1.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2.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23.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4.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 제도의 연구·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4.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 개발의 지원

5.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6.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7.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8. 기술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0.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11.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13.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4. 기술거래사 등록·육성 및 지원

지원

25.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26. 기술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7.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28.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29.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31.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2. 기술거래사 등록·육성 및 지원

33.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34.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출자·관리

3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등을 포함한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36.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15.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16.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출자·관리

17.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등을 포함한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8.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19.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1. 녹색기술·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22. 산업계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23. 이공계 기술 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정책에 관한 사항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25.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권리화에 관한 지원

37.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39. 녹색기술·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40. 산업계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41. 이공계 기술 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정책에 관한 사항

4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43.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⑨ 산업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국내외 제도·규제 동향 분석

2. 산업 분야 제도·규제개선 관련 정책 수립

3. 산업 분야 제도·규제 개선 과제 발굴·기획·이행·점검 및 총

26.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 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
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
성 사업 기획·추진

27.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산
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추진

28.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등의 수
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29.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30.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제조업 등에 관한 유공자 포상
제도의 수립·운영

31.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 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
협회의 육성 및 지원

⑩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

관 조정

4. 산업 분야 제도·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 및 기업활
동 제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6.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산업 규
제개선사항의 발굴·검토 등 총
괄

7. 「산업융합촉진법」의 운영
에 관한 사항

8.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시행

9. 산업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10. 산업융합촉진 읍부즈만 운
영·지원 등 산업 융·복합화 저
해 현장 규제 발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11.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조
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산업융합 규제특례전문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4.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총
괄

5. 소관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의 수립·평가 총괄

6.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경제·산업동향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
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조정·
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
항

12.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
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 운용

14.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
항

15.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
허가의 운영·관리·감독에 관
한 사항

16.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의 사업 개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8.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의 규제 특례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19.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
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산업 분야 규제혁신
에 관한 사항

⑩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

21.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23.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24.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업 등(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3.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제조업 등에서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선도과제 발굴·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5. 제조업 등에서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

6.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운영

7. 제조업 등의 산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25.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발전의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0.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3.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34.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추진

10.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추진

11.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12.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 관련 조사·분석

13.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제조업 등에 관한 유공자 포상 제도의 수립·운영

14.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협회의 육성 및 지원

15.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기관 간 협력

16. 제조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4.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 정책의 조사·분석·성과평가·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업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정책의 수립·시행

8.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9.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향의 분석·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10. 지방투자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투자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수행 및 사업이행 관

17. 제조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연계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9. 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장비 산업(연구·정보통신·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기계요소 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일반기계·장비 산업 기술의 개발·보급·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반기계·장비 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 산업 발굴 및 육성

5. 일반기계·장비 산업의 서비

리

1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기반 성장지원 및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16.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 지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⑫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입지 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의 수립·시행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장비 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4. 우수 로봇 제품·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

수립 · 시행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 · 운영

9. 산업단지 재난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의 수립 · 시행

1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2.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의 수립 · 시행

13. 산 · 학 융합지구의 지정 · 조성 · 지원

14. 공장 설립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

15.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과 관련 규정의 관리

17. 공장설립지원센터 · 공장설립움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관리 · 감독 및 지원

18.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19. 일반기계 · 장비 · 로봇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일반기계 · 장비 · 로봇 산업 관련 전시 · 경진대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일반기계 · 장비 · 로봇 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2. 일반기계 · 장비 · 로봇 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제도 개선

23. 일반기계 · 장비 · 로봇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24.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확산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5.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확산하기 위한 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제조 공장 등 산업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지도 · 감독

⑬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정책의 수립 · 시행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 · 조정 및 예산 · 사업 · 성과 관리 총괄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발굴 · 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5.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6.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7.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9.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27. 그 밖에 일반기계 · 장비 · 로봇 산업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⑭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 · 시행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 · 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구축 · 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 · 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 · 수출입 · 내수 · 설비투자 및 연구

10.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입지 및 투자 지원

11. 중견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16. 중견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관 내 다른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⑭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

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6.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건강관련 산업의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바이오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⑬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한 지원사업의 발굴 · 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정책의 수립 · 시행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 재산경영 지원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의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 · 지원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 · 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 ·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 · 관리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素子) · 재료 · 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5.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전자 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 · 추진

6.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시험 · 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 · 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 · 운영

8.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

·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⑮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정

책의 수립·시행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

업태의 지원·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공동물류 지원 정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

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

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

력 지원

10.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

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공

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

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

발 및 보급·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

반 조성 및 육성·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

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

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

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

석

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의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충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배터리·전자·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23.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4. 그 밖에 유통·물류 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⑯ 규제샌드박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3.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4.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5. 그 밖에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⑮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 · 패션 · 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섬유원료산업(화학 · 천연 · 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 산업, 직물 · 니트산업, 염색 · 가공산업, 패션 · 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 · 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기술융합화 · 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 · 의류 · 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 · 칼라, 패션 서비스 · 비즈니스, 패션브랜드 · 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 섬유 · 탄소섬유 · 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 ·

건축용, 수산·해양용, 의료용
섬유사·직물·제품 등을 포함
한다)의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
반의 조성

6. 화학섬유·염색가공·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
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
항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
·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
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
에 관한 사항

8.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
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
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1. 탄소소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탄소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공급 안정에 관한 사항

13. 탄소소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14. 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탄소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탄소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17. 탄소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18. 탄소소재의 공급기업 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9. 탄소소재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진

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
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
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22.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23.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
성 및 관리

24.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
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5.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
장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26.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
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7.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28.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 추진 및 보급

29. 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
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30.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
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
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
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운

영

31. 그 밖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33.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⑯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디스플레이산업 · 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 · 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 · 추진

3. 소관 산업에 대한 시험 · 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 · 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4. 소관 산업에 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 · 운영

5. 소관 산업에 대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6. 소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7. 소관 산업에 대한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소관 산업에 대한 표준화 · 공용화 · 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 · 시행

9.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 · 수출입 · 내수 · 설비투자 ·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11. 소관 연구기관 · 단체 · 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 · 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 · 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

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산업정책국에 자원안보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석탄산업과 및 광물자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광물자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3.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4. 자원 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5.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

자원안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안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원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자원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원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에 관한 사항

6.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7.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
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
반 구축

8.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
안의 수립·시행

9.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시행

11.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
의 수립·시행

12. 국내외 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13.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
공

14.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유통·관리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통
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4조제3항제73호부터 제99호까
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
좌한다.

⑥ 산업자원안보실에 자원안보
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
과·석탄산업과·산업공급망정
책과·소재부품장비개발과·철
강세라믹과·화학산업과·무역
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 및 광물자원팀·자원
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
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
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
로 보한다.

⑦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
본계획의 수립·운영

2. 자원안보협의회의의 구성·운영
에 관한 사항

3.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의 수립·시행

15.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6.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7. 석유·가스 광산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8. 북한과의 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19.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 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석유·가스 관련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1.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22.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오일샌드(Oil Sand) 등 차세대 자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23.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24.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25.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

4.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전담기관의 지정·관리

5.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등 자원안보 정보의 종합관리

6.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핵심자원 공급망 취약성 점검·분석 등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7. 핵심자원의 비축 및 비축계획의 수립·시행

8. 핵심자원 재자원화 시책 수립·시행 및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운용

9.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정 명령 등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10. 자원안보 위기 경보의 발령

11.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12. 자원 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13.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의 운영

26.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7.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28.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9.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
업 지원

30.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
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시행

31.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32.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
립·시행

33.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지
원에 관한 사항

34.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시
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
립·시행

35.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안
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안전관
리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15.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
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
반 구축

16.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
안의 수립·시행

17.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18.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시행

19.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
의 수립·시행

20. 국내외 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21.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
공

22.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유통·관리

23.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36.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37.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운영

38.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39. 그 밖에 자원산업정책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시행

24.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5. 석유·가스 광산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6. 북한과의 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7.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 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8. 석유·가스 관련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9.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30.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오일샌드(Oil Sand) 등 차세대 자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1.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3.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4.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영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관한 사항

35.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6.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37.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8.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9.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40.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

41.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2.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4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⑤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영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 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⑥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⑨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
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
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
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
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
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
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7항제13호
의 사항은 제외한다)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
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
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
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
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
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관
련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 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
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물자원(해외·해양 광물자원을 포함하며, 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4. 광물자원 개발 관련 재정 지원
5. 광물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6.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⑩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축 · 운영

8. 광물자원 개발 통계의 생산

· 유통 · 관리

9.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 · 지원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

립 · 시행

11.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

연구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

한 사항

13. 광물자원 개발 · 비축 · 가공

과 관련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석재 · 골재자원의 조사 · 개

발에 관한 사항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16.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

조직 · 투자제도 등의 조사 · 개

선

17.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

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 · 관

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

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18항제13호

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육

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개

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

4.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및

19.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0. 광산(석유·가스 광산은 제
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
구·개선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7.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
화에 따른 소관 산업 내 지식기
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8.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9.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
분석

10.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보공유 촉진 및 지원

11.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
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
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관리

13.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
본정책의 수립·시행

14.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15.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
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6. 뿌리산업 소관 법령·제도의 운영

17. 그 밖에 산업공급망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
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부품·장비별 사
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
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
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정책
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
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
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 · 시행

7.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8. 소재 · 부품 · 장비의 전문화 · 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11. 소재 · 부품 · 장비의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 조성

12.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 · 학 · 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14.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15.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7.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⑬ 철강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비철금속·세라믹(유리·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철강·비철금속 광석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 · 비철금속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철강 · 비철금속 · 세라믹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철강 · 비철금속 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 · 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稀有)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철강 · 시멘트 · 레미콘 · 세라믹 산업의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철강 · 시멘트 · 레미콘 · 세라믹 산업의 지원 ·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1. 세라믹 산업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2. 철강 · 비철금속 · 세라믹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3. 세라믹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

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4. 세라믹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소관단체 · 협회 · 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 · 수출입 · 내수 · 설비투자 ·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⑭ 화학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 · 중간원료 · 제품 공급안정화 정책의 수립 · 시행

3.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 · 분석

8.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
업·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
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
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
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
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
석

12.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⑮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
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
·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
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

에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
· 관리 및 정보의 조사·연구

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
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
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
· 조정 및 집행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무역제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
도의 기획·운영 총괄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운영 총괄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 1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
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
한 사항
-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
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
행 업무
-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
조치에 관한 업무
- 23.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 24.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에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 25.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 26. 무역안보 관련 국제공조 강
화 및 국가 간 협력
- 27.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
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
- 28. 무역안보관리원 업무의 지
도 및 지원

29. 그 밖에 무역안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영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11.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2.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무역제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⑰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이하 이 항에서 “기술안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및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운영

7.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분석·관리

9.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10.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 15.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및 운
영 지원
- 16.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해제
- 17.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 및 판정신청통지
- 18.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말소
- 19.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20.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에 관한 사항
- 21.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 22.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
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23.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
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 24.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
제협력사업의 추진
- 25.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
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
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26. 기술안보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

⑱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물자원(해외·해양 광물자
원을 포함하며, 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운영

2.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
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4. 광물자원 개발 관련 재정 지
원

5. 광물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
의 지원

6.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환
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
의 제공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
축·운영

8. 광물자원 개발 통계의 생산

· 유통 · 관리

9.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 · 지원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
립 · 시행

11.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
연구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
한 사항

13. 광물자원 개발 · 비축 · 가공
과 관련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석재 · 골재자원의 조사 · 개
발에 관한 사항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16.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
조직 · 투자제도 등의 조사 · 개
선

17.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19.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20. 광산(석유·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⑲ 자원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송유관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3.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4. 가스·송유관에 관한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5. 가스·송유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6. 가스안전기기 등 안전 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

7. 가스·석유 관련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점검·평가

8. 가스·석유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감독

9. 가스안전 관련 민·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0. 가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12조(통상정책국) ①·② (생략)

③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미주통상과·구주통상과·신통상전략과·디지털경제통상과·기후에너지통상과 및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미주통상과장·구주통상과장·신통상전략과장·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중

교육·홍보

1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부담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통상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장-----
--.

④ ----- 통상정책총괄과·미주통상과·구주통상과·신통상전략과·디지털경제통상과·기후경제통상-----

----- 기후경제통상과장-----

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9. <u>미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u>	<u><삭 제></u>
10. <u>미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u>	<u><삭 제></u>
11. <u>미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2. <u>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3. <u>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u>	<u><삭 제></u>
14. ~ 20. (생략)	8. ~ 14. (현행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	15. ----- -- <u>제14호</u> --

의 협조

⑦ ~ ⑨ (생략)

⑩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⑪ (생략)

제14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24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기후경제통상과장-----
-----.

1. ~ 15.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통상협정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

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 정책기획과 · 자유무역협정이행과 · 통상협정활용과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 자유무역협정상품과 ·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 통상법무기획과 · 세계무역기구과 · 다자통상협력과 · 통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팀장은 과학기술서

좌한다.

④ 통상협정교섭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교섭실에 통상협정정책 기획과 · 통상협정이행과 · 통상협정활용과 · 통상협정협상총괄과 · 통상협정상품과 ·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 통상협정무역규범과 · 통상법무기획과 · 세계무역기구과 · 다자통상협력과 · 통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

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⑦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2.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사전 타당성 조사 · 분석
3.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 · 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4.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5.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

다.

⑦ 통상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2. 통상협정 체결의 사전 타당성 조사 · 분석
3. 통상협정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 · 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4. 통상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5. 통상협정 체결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통상협정의 추진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통상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 · 시행

영과 관련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

시행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

무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내 절차의 수행

5.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6.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영업 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

의 협조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3.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

상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내절차의 수행

5. 통상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6. 체결된 통상협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7.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영업 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

의 협조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시행

4.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수립·

구성 및 운영 · 지원

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
립 · 시행

4.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수립 ·
시행

5.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 · 시행

6.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사후평
가 및 이행상황 점검

7. 통상협정 활용을 위한 국내
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지원

8.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9.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 분석 · 연구

10.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의 수립 · 시행

12.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

5.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 · 시행

6.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사후평
가 및 이행상황 점검

7. 통상협정 활용을 위한 국내
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지원

8.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9.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 분석 · 연구

10.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의 수립 · 시행

12.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 · 보급
및 확산

13.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홈페이지 운영 · 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
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확산

13.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
책 관련 홈페이지 운영·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
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
의 협조

⑩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
조정

2. 자유무역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
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
는 사항

⑪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안
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
무

의 협조

⑩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협상의 총괄·조정

2. 통상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
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
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
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그 밖에 통상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통상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
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
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
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
무

4. 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
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
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⑫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유보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6. 통상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7. 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⑫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유보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 ·
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 ·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⑬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
· 비관세장벽 · 정부조달 · 경쟁
정책 · 환경 · 노동 관련 무역규
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
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자유무역
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협조

⑭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지식재산권 · 비
관세장벽 · 정부조달 · 경쟁정책
· 환경 · 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
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
섭에 관한 업무

3. 통상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
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통상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
섭에 관한 업무 중 통상협정교
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않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 · 연구

⑮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
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2.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
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2.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
립 및 이행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
· 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연
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
립 및 이행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
· 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연
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
조

10. 그 밖에 다자통상법무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

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무역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

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무역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⑯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

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⑯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무역 · 환경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무역 · 환경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8.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의 수립 및 시행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
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
구에 대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
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
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⑮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
행 및 총괄·조정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
·서명의 총괄·조정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
·운영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
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
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⑮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
행 및 총괄·조정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
·서명의 총괄·조정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
·운영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
조

제15조(무역투자실)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
역투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무역
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
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③·④ (생략)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통
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9조제3항제30호부터 제56호까
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
조

제15조(무역투자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원전전략기획관으로 -----
----- 원전전략
기획관은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원전전략기획관-----

----- 제45호-----

좌한다.

⑥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 · 무역진흥과 · 수출입과 · 투자정책과 · 투자유치과 · 해외투자과 · 무역안보정책과 · 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 ⑨ (생략)

⑩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략)

26.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 ⑫ (생략)

⑬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 · 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

⑥ ----- 무역정책과 · 무역진흥과 · 수출입과 · 투자정책과 · 투자유치과 · 해외투자과 · 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수출협력과-----

-----.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1. ~ 25. (현행과 같음)

26. ----- 관련한 사항 및 투자정책관 내 -----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 · 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

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

에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

· 관리 및 정보의 조사·연구

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

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

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

· 조정 및 집행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무역제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

도의 기획·운영 총괄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운영 총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

련 및 개선

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

정의 관리 및 시행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7.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및 수출통

제 준수를 위한 홍보 대책의 수

립·추진

8.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9.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동향 분석과 관련

통계 관리

11.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 및

수출 통제·관리를 위한 정보시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
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
한 사항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
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
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
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
도 및 지원

⑭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스택의 구축·운영

1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수출 통제·관리
를 위한 관련기관·단체와의 협
력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
항

1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통제·관리, 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다
자간 국제협력

1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위반 방지
대책 수립 및 추진

1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관리 관
련 외국제도 분석·대응

1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
·설비 및 기술의 수출과 수출
의 통제·관리를 위한 사항 및
원전전략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원전수출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영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11.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2.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

런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무역제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⑮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이하 이 항에서 “기술안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및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운영

7.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삭 제>

마련

8. 국가핵심기술 · 전략기술 · 민
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
· 분석 및 통계의 분석 · 관리
9. 국가핵심기술 · 전략기술 · 민
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
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10. 국가핵심기술 · 전략기술 ·
민감기술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연구
· 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
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
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 변경
· 해제 및 수출 승인
16.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17.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
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19.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0.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2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2.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에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23.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24. 무역안보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25.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① ~ ③
(생략)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실무 교섭에 관한 업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통상협정-----

무	--
2. <u>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협상안의 수립·조정</u> 에 관한 업무	2. <u>통상협정</u> ----- ----- -----
3. <u>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u>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3. <u>통상협정</u> ----- ----- --
4. <u>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u>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4. <u>통상협정</u> ----- ----- ----- --
5. <u>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u> 분야 이행, 활용 및 후속 업무	5. <u>통상협정</u>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u>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7. <u>통상협정</u> ----- ----- -----
8. ~ 11.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35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에너지통상과

2. (생 략)

3.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제10장 한시정원

<신 설>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1. -----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

2. (현행과 같음)

3. 통상교섭실: 통상협정정책기획과, 통상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 통상협정협상총괄과, 통상협정상품과,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통상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

제40조(한시정원)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u><신 설></u>	<u>전문관으로 보한다.</u> <u>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u> 제41조(한시정원) ① ----- ----- ----- ----- 2027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 ----- --. <u>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u>
---	---

신·구정원대비표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83</u>	<u>810</u>	+27
•	•	•	
•	•	•	
일반직 계	<u>773</u>	<u>800</u>	+27
고위공무원단	<u>27</u>	<u>29</u>	+2
•	•	•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u>16</u>	<u>18</u>	+2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u>40</u>	<u>41</u>	+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
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
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
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
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61

62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221

+22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10	<삭 제>	-210
--	------------	--------------------	-------------

210

-210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
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
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
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
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
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
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
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
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
사 또는 기록연구사

<신 설>

149

+149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u> <u>·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u> <u>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u> <u>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u> <u>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u> <u>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u> <u>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u> <u>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u> <u>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u> <u>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u> <u>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u> <u>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u> <u>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u> <u>시설연구사</u> · ·	<u>142</u> · ·	<u><삭 제></u> · ·	-14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	<u>56</u> ·	<u>59</u> ·	+3

	.		.		.	
--	---	--	---	--	---	--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83</u>	<u>810</u>	+27
정무직 계	<u>4</u>	<u>3</u>	-1
•	•	•	
•	•	•	
일반직 계	<u>773</u>	<u>800</u>	+27
고위공무원단	<u>27</u>	<u>29</u>	+2
•	•	•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u>16</u>	<u>18</u>	+2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u>40</u>	<u>41</u>	+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 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 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서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 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 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u>64</u> .	<u>65</u> .	+1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238

+238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u> <u>·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u> <u>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u> <u>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u> <u>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u> <u>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u> <u>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u> <u>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u> <u>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u> <u>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u> <u>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u> <u>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u> <u>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u> <u>사 또는 기록연구사</u>	<u><신 설></u>	<u>140</u>	+140
---	--------------------	------------	------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u> <u>·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u> <u>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u> <u>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u> <u>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u> <u>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u> <u>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u> <u>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u> <u>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u> <u>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u> <u>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u> <u>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u> <u>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u> <u>시설연구사</u> · ·	<u>133</u>	<u><삭 제></u>	-13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u>49</u>	<u>52</u>	+3

	.	.	.	
	.	.	.	